시사특집

지하경제의 실태와 대처방안

보이지 않는 돈 — 부정·부패의 고리

Ⅰ. 序

경제이론이란 현실의 경제적 상황들을 설명하는 도구로써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제학적 제이론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현상들은 부지기수이며 이들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경제이다. 요즘 매스컴에서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비리와 관련된 뇌물수수, 부정 입학·교수채용과 관련된 커미션류의 금융거래는 모두 이러한 지하경제 자금의 유통과정이다.

장래 교체때마다 주요 선거공약으로 오르내리는 단골메뉴중 하나가 또한 이 지하경제에 관한 것이다. 즉 지하경제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금융실명제의 실시이다. 그러나 이제도의 시행은 매번 시기상조론 내지 선중론이 우세하여 그 시행이 연기되어 문민정부에까지 밀려왔으나 아직도 그 시행시기는 불분명하다.

Ⅱ. 유통 및 저장

지하경제의 세계는 생성과정과 유통, 저장과정 등의 다중구조로 되어있다. 다시말해 지하경제는 끊임없이 창출되는 동시에 유통, 증식되는 것이다. 생성과정의 가장 바닥레에 있는 것은 마약, 도박, 매춘 등의 비합법적인 범죄 행위일 것이다. 그 위에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탈세지층이 점지게 되고, 이는 절세 지층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다.

편법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자금들은 그 유통과정이 세상에 표출된 예는 거의 없지만, 때에 따라 그 모습을 확실히 드러낼 때도 있다. 앞서말한 부정비리에 관련된 자금들, 특히 최근에 신문지상의 일면을 차지했던 슬롯머신(slot machine) 대부 정덕진사건은 지하자금이 그 모습을 나타낸 대표적인 예이다.

또다른 유통경로로는 암시장을 들 수 있다. 지금은 덜하지만 과거 60~70년대에 성행했던 미군물자의 불법거래, 밀수된 전자제품, 배급제도에서 부정 유출된 물자등이 이 시장에서 매매된다. 이는 지금도 사회주의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암시장은 일반 시민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시민 생활을 위한 필요악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자중의 하나는 달러인데 이렇게 조달된 달러는 비밀 루트를 통해 미국등으로 환류되는데 이를 캐피탈플라이트(capital flight), 즉 자본의 비행이라한다.

한편 다양한 형태로 생성된 지하경제의 자금은 개인의 유흥비, 정치헌금이나 뇌물, 기업의 공사비, 폭력단의 운영비 등의형태로 소비되는 동시에 여러가지 형태로 저장되기도 한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저장 방법은 현금, 증권, 귀금속등의형태로 저장하는 것이다. 현금에의한 저장방법은 미국과 같이 금융실명제가 자리잡은 나라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이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가명구좌개설이 손쉬운 나라에서는 은행에 버젓히 예금되어지거나 무기명채권의 형태로 보유되어진다. 또한 자본의 해외거래가 어느정도 자유로와짐에 따라 해외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비밀운용도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지하경제는 그 생성과정 못지 않게 운용과정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Ⅲ. 지하경제의 영향과 규모

앞서 누차 언급한바와같이 지하경제의 자금은 많은 계층들과 연결되어있다. 즉 정치, 종교, 학원, 기업들은 물론이고 심하게는 일반시민들조차도 이러한 지하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지하경제는 이른바 거리의 금융인 사채로 대표되는데 이들 사채들의 대부분은 서민들의 짜투리 돈으로 구성되어진다. 다시말해 한국의 사채는 원래 옛날부터 존속해온 '계'라는 형태의 '서민금융'등을 토대로 성립된 사적 금융이지만 그 규모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때문에 때때로 대형 금융범죄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사채 시장이 대형 자산가의 도세, 탈세 자금의 도피처가 되기도 하고, 범죄 자금의 세탁장이 되기도 하는 등 갈수록 문제가 복잡, 심각해지고 있다. 80년대초 큰 문제가 되었던 '어철회, 장영자 사건'의 경우가 한 좋은 예일 것이다.

1986년 연초부터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비정상적인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1980년부터 5년간 30퍼센트의 상승에 그쳤던 종합주가지수가 1985년 7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86년 이후 6개월간 무려 50퍼센트가 상승하였다. 이렇게 주가지수가 급등한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3저현상으로 인한 경제의 소생이며, 둘째 자본자유화의 진행에 따른 호재의 작용과 마지막 세번째 원인으로는 한국의 풍요로운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몰려든것을 들 수 있다. 이들중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세번째 사채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이다.

지하경제의 암거래적 속성때문에 한나라의 지하경제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대체변수들로서 그 규모와 실태를 추정할 수는 있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는 금융실명제가 자리를 굳히고 있고 신용카드 위주의 사회이기때문에 지하자금의 보유 형태는 현금에 대부분을 의존한다. 따라서 총통화량중 현금보유잔고의 규모로써 그 실태를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명구좌의 개설이 아주 손쉽기 때문에 이런식으로의 측정은 불가능하며 원시적인 손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즉 경제활동 개개별의 추정지하자금을 합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최광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의 규모는 대략 전체 GNP의 20퍼센트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의 60퍼센트에 비하면 아주 낮은 편이지만 일본, 미국의 10%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Ⅳ. 대책 및 결론

요즘 말썽이되고 있는 부정비리에 관한 암지금들은 앞서의 반세, 비세, 도세등의 세금포탈 방식들에 의해 형성된 자금들의 변형된 형태들일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하경제의 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란 불가능하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지하경제의 자금들을 완전히 제도권내로 끌어들이기란 불가능하다. 지하경제의 자금들을 지상으로 부상시키는 여러가지 방법중 가장 대표적인것은 금융실명제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상으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금의 규모는 적어도 50퍼센트의 수준까지 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즉 재산소득세나 금융소득세등 자산소득에대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지하자금의 점차적인 부상을 유도할 수 있다.

증권시장의경우 과거 70%를 웃돌던 가명구좌의 비율이 현재 3~5%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으며 이는 국가전체적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확실시 여기고 있는 심리적 요인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규금융기관을 '정상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사채시장에 있는 자금을 서서히 제도권내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꺾기등 굴융기관의 불법대출관행을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기업투자자금조달방식을 현재 사채시장에서 은행등으로 유도함으로써 사채시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혹자들은 자본자유화와 금융실명제로 인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로 선진외국의 경우 오히려 불법자금형성이 어려우므로 자금의 해외유출은 없거나 아주 적을것으로 본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에 의한 지하경제자금의 통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것으로 예상할 순 있지만 부작용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선전하지만 정책에 있어 만병통치약은 없지않겠는가?

박 현 철
〈본교석사과정·경제학〉

불법행위와 탈세, 서민의 '사채'도 일익

검은돈 측정 불가능, 실명제등 제어책 요구돼

「평등강화 모성보호확충」이루어져야

◇…근로기준법중 모성보호조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모성보호조항에 관한 논의를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것은 5월 7일 디자인포장개발연구원에 근무하는 김주미(33)씨가 낸 '임신중 생리휴가 사용 및 산전산후기간중 월차지급청구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이 '산전산후 월차지급은 인정되고 임신중 생리휴가 사용부분은 기각'되는 일이 일어남에 따라 여성계의 큰 반발과 함께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중 생리휴가에 관한 논의를 하기전에 근기법에 나타나 있는 모성보호조항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이 논의의 이해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근기법 제5장 59,60,61조에 보면,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그리고 육아시간에 관한 모성보호조항이 명시되어있다. 그 조항의 내용을 보면 '제59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산전산후휴가]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임신 중의 여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61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내 이러한 모성보호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기 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고용주로 하여금 생산성 저하나, 복지비용의 추가지출 등의 이유로 여자 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들면 제61조 [육아시간] 조항의 경우 1년 미만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의 지출을 요구하게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근기법내 모성조항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 부족의 문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임신중 생리휴가 사용'의 문제에도 적용이 된다. 모성보호조항이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국민,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의 확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때, 임신중 생리휴가의 사용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근로 여성의 임신중 정기 건강검진이나 입덧 휴가 등의 모성보호조항이 부재한 현실에서 생리휴가를 임신중에도 적용하여 이들 위한 날로 만들어 져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기법에 임신중 생리휴가 사용 인정을 단서조항에 넣든지 모자보건법에 임신중 월1일의 생리휴가를 정기검진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분화할 것'이라는 지금 여성계의 주장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성보호에 관한 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것은 보호와 평등의 문제이다. 모든여성 근로자를 잠재적인 어머니로 규정하는 제도화된 모성은 기존의 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여성을 잠재적인 어머니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모든 복지를 제도화한 스웨덴이나 북한의 경우를 보면 잘 드러난다. 이들 나라에서는 질 높은 모성보호가 이루어지고 여성에 관한 복지제도가 확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분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보호와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성계의 명확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며, '평등강화 모성보호확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 역시 아직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면서 모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사람의 여자 '노동자'로서의 '평등'이 강조,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 혜 원
〈한국여성연구회 연구원〉

데스크 칼럼

K형! 대학주보는 고민합니다

오 홍 섭
〈본보 편집장〉

K형!

올해로 우리 신문이 창간 38돌을 맞았습니다.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를 오직 '정론직필'의 신념하나로 달려온 대학주보가 매체, 주체, 생활의 혁신을 주창하며 오늘 이렇게 독자대중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위해 주말 오후 인쇄소 한구석에서 활자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K형!

그런데 요즘의 우리신문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학신문은 두개의 존재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개의 존재기반이란 곧 대학신문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독자대중에게 그 존재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결국 읽히지 않는 신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신문이란 곧 휴지조각보다 못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신문의 존재 여부는 독자대중의 관심어린 애정과 끊임없는 질책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이며,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재생산구조로서 종족보존을 위한 후손을 끊임없이 출산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말해서 독자대중과의 약속, 즉 매주 필요일이면 어김없이 우리 신문은 발간되어야 하고 보다 폭넓은 정보와 사상, 실천의 변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둘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다면 우리 신문은 매우 위독한 환자처럼 비틀거릴 것이 분명하고 위태로운 존재확보 싸움을 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학신문의 존재가 외부의 직·간접적인 탄압에 의해서 위협을 받은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지난 89년부터 실질적으로 제기된 '매체혁신'의 이름아래 줄더 친숙한 신문, 항상 함께 호흡하는 신문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지금도 그러한 자세는 변함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K형!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존재가치의 문제에 있으며, 지금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혼돈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자신의 존재가치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자신의 생활 질서와 체계도 없이 나태한 수동적인 삶을 살다 결국에는 사표라는 중대결단으로 마무리 지어지곤 하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K형!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두가지 문제점 중에서 독자 대중들에 의한 존재기반은 이미 매체혁신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부분이기에 일단 자후로 미룬다고 해도 바로 우리 신문사 스스로 자키고 치유해야 할 자체 재생산 능력에 대한 문제는 아직 이렇다 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기에 이렇게 형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K형!

너무 많은 문제들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정리하고 우리들이 나아가고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형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지식과 현실의 유리라는 모순에 대해 이렇게 고민하고 대치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앞서의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독자들에 대한 사랑이 우선하고, 독자들의 애정과 관심어린 질책이 함께 공유된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속에서 우리 신문이 변혁운동에 충실히 복무하고자 한다면 이론과 실천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독자대중과 언론일꾼들이 어우러질 수 있음을 알게 될것입니다.

창간 38돌을 맞은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신문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러한 부분들이 독자와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된다면 우리들 대학주보의 거듭남을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화신문 자주화를 위한 문화공연" 기획광고

때와 곳 : 5월 19일(수) 부산 동아대 4시, 7시
5월 21일(금) 광주 전남대 4시, 7시
5월 23일(일) 서울 홍익대 3시, 6시
5월 24일(월) 서울 홍익대 4시, 7시

주 최 :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대학신문 86 기자동우회
후 원 : 전국언론 노동조합 연맹·한국 기자협회
민주언론 운동 협의회·한국 주필간 전문 기자회
바른글을 위한 자유기고가 모임
애드라인·해럴드 인쇄소
초청가수 : (서울) 전지연(대표 김성민)
모희라(노래를 찾는 사람들)
예매처 : 종로서적·교보문고·을지서적·기타 유명 사회과학 서점
일반 5,000원
학생·예매 4,000원

땀과 고뇌와 사랑을 공유코자 합니다.

신문쟁이(?) 그녀석 오늘도 보이지 않는다.
뭐가 그리 바쁜지 수업이고 과 야유회고 오지를 않는다.
가끔… 오며가며 마주칠 땐 그래도 "요즘 동기들 어떻니?" "다음에 술 한잔하자"던, 꾸밈없는 미소 가득담던 얼굴을 보였는데, 4월 어느날, 그 애 얼굴엔 웃음이 가셨다. "대학신문의 주인은 학우"라고, "편집자율권 쟁취하자"고 검게 그을린 얼굴로 다가왔다.
굳게 다문 입술,

매주, 별다른 이유없이 집어 보는 대학신문은 기자들의 땀과 고뇌와 사랑의 결실입니다. 여기! 신문이라는 활자로 된 매체가 아닌 노래와 문화로, 백만청춘을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 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